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데이터 및 통계 등에 관한 정책 총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데이터혁신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5. ~ 7.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데이터혁신기획팀”으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을 “데이터혁신기획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을 “데이터혁신기획팀장”으로 하고, 제10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및 통계 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 조정
2.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총괄·지원
3. 식품·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 수집,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 및
활용
4. 식품·의약품등의 통계 개발·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발굴 관
리
5.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의약 통계 품질
관리

6.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기반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련 플랫폼 구축

7.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통계 등 분야 교육·문화 확산 및 전문인
력 양성

8. 식의약품안전백서 및 통계연보 등 간행물 발간

제23조제7항제1호 중 “식품안전”을 “구강관리용품 및 식품안전”으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 중 “화장품”을 “화장품·의약외품 및 위생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의 시험·검사, 기준·규격, 안전성에 관
한 연구 및 기술검토

13.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기
술지원

총리령 제1640호를 삭제하고, 총리령 제182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데이터혁신기획팀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
이 지난 날부터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화담당관
이 분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 ----- ----- ----- 데이터 혁신기획팀 ----- ----- ----- ----- ----- ----- 데이터혁신기획팀장 ----- ----- ----- ----- -----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⑩ 데이터혁신기획팀장----- ----- -----

1. 식품·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빅데이터에 관한 기획·발굴·제도 마련 2. 식품·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빅데이터에 관한 플랫폼 구축, 수집, 제공 등 개방·활용 지원 3. 식품·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빅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및 운영실태 평가 4. 식품·의약품등의 통계 기획·조정 등 통계업무 총괄 5. 식품·의약품등의 통계 개발·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발굴 관리 6. 빅데이터·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의약 통계 품질관리 7. 백서 및 통계연보 발간 8.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및 통계 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조정 2.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총괄·지원 3. 식품·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 수집,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 및 활용 4. 식품·의약품등의 통계 개발·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발굴 관리 5.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의약 통계 품질관리 6.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기반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련 플랫폼 구축 7. 식품·의약품등의 데이터, 통계 등 분야 교육·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 8. 식의약안전백서 및 통계연보 등 간행물 발간
--	---

9. <u>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u> <u>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u> <u>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삭 제>
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① ~ ⑥ (생 략)	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화장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화장품·의약품 및 위생용품(<u>식품안전과</u> 관련된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격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 ----- -- <u>구강관리용품 및 식품안전</u>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u>화장품</u> 시험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지원	5. <u>화장품·의약품 및 위생용품</u>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⑧ 의료기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의 시험·검사, 기준·규격, 안전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검토
<신 설>	13.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실태조사 기술지원

13. (생 략) 총리령 제182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생 략) 제2조(<u>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u>)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11. (현행 제13호와 같음) 총리령 제182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u>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u>) ----- ----- ----- ----- -----2027년 7월 31일----- -----
--	---